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홀 운영 규정

제정 : 2009 . 7.6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한마당 홀(이하 “홀”이라 한다) 을 한국문화의 보급 및 한일(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한국문화예술의 진흥·발전 및 한일(국제)교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관 시설)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홀 시설 또는 부대물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대물품 등의 사용은 협의하여 정한다.

1. 대관시설

가. 홀

나. 홀 대기실

다. 홀 기계 조작실

라. 기타 문화원이 홀과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

2. 부대물품

가. 마이크, 프로젝터 등 행사 관련 부대장비

나. 장구, 북, 가야금 등 전통악기

다. 기타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행사 관련 용품

제 3 조(대관신청) 문화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 신청자”라 한다.)는 대관신청서(붙 1)를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신청은 문화원이 별도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단, 홀 사용 일정에 지장이 없거나 문화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선고방법은 문화원장 주도로 문화, 예술, 방송, 한국어 교육 분야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대관 가부를 결정한다.

제 4 조(대관 및 사용시간) 문화원장은 공연·영화상영회·세미나 등(이하 “행사”라 한다) 문화원 자체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홀을 대관할 수 있다.

1. 한국문화의 보급 및 발전과 한일(국제)문화교류와 관련한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3. 문화원장이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대관기간은 많은 단체의 이용을 위해 연속 3 일이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개 단체 연간사용 15 일 이내로 제한)
5. 대관시간은 월~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9 시~22 시 (반입 및 철수 시간 포함)로 한다.

요일	월~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시간	9 시~22 시	휴관

제 5 조(대관신청의 제한)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불허 할 수 있다.

1. 한국 및 주재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3. 개인, 기업,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또는 시상식 등의 행사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문화원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6. 기타 문화원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행사 진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행사

제 6 조(대관승인 및 계약체결) 문화원장은 대관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관을 승인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문화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대관 승인의 가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2. 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대관승인서(붙임 3)에 기재한 기일까지 제 9 조 제 4 호에 따른 홀 사용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건부 대관 승인을 결정 할 수 있다.
4. 문화원과 대관신청자간의 대관 관련 계약은 대관신청서에 입각한 대관승인서 발부 및 홀 사용실비 납부 완료로 대신한다.

제 7 조(승인취소 및 중지)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관 승인 후 본 규정 제 4 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
2. 대관 신청 내용과 다른 행사를 진행할 경우
3. 대관 승인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정한 기일 내에 홀 사용실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행사 개최일 1 개월 전까지 행사 내용 및 자료가 홍보, 배포 되지 않을 경우

제 8 조(대관내용 변경)

- ① 대관신청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대관 승인 변경 신청서를 30 일 이내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②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설 등의 사용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대관 승인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홀 사용실비)

홀 사용실비의 결정, 납부, 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홀 사용실비는 매년 홀 관련 광열비, 시설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홀 사용실비는 사용일 및 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3.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문화원 지정일전까지 홀 사용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문화원이 주최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문화원의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5.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홀 사용실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항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는 홀 사용실비의 전부를 반환한다.

-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② 문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때
- ③ 행사 개최일 15 일전까지 시설사용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취소 신청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 10 조(시설사용자의 준수 및 의무사항)

①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지켜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여야함
3. 문화원장이 정한 시설사용자 의무사항(붙임 2)을 준수 하여야함
4. 문화원장이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함
5. 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반드시 하여야함

② 상기 의무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관을 금지 할 수 있다.

③ 대관자는 행사를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등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 11 조(손해배상)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대관 시설 및 대여 부대물품 등의 훼손, 망실에 의한 손해
2. 문화원의 제반 관리 시설 등에 발생한 손해가 당해 행사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3.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관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년 7 월 6 일 부터 시행한다.